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83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민간 역량을 엮어내는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판로 확대, 전문적인 인재 양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사무로써,
-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통·폐합을 통해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정보와 지원의 통합,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시설관리+사무)
 - 위탁기간 : 3년(2024.1.23. ~ 2027.1.22.)
 - 조직인력 : 총 5팀 20명(센터장 1명, 팀장 5명, 팀원 14명)
 - 위탁시설
 - 명칭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지상5층~지상 6층)
 - 위치 :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규모 : 연면적 4,872㎡(지하2층~지상6층) 중 1,093㎡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공정경제담당관)
- 건축시기 : 2021.4월(부지 및 건물 - 기부채납)
- 시설현황 및 사용계획

구 분	현재 사용용도	면적(㎡)	관리부서	비 고
1층, 2층	기업 입주공간 (3개)	1,12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3층, 4층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 (서울개봉솔루션앵커)	1,295	서울시 (뷰티산업과)	
5층, 6층	기업 입주공간 (12개)	1,093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위탁 센터 사용시설

- (5 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공간 및 공용 공간
- (6 층) 교육장,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조합원, 임직원 교육
-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 위탁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간의 상생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무로 인사이동이 빈번한 공무원 직접수행 보다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민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여,

-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분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필요

- 2024년 예산편성(안) : 2,973백만원

※ 2023년 예산편성(기준) : 3,119백만원

- 제3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2024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 제3차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23년 9월중 수립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관우(☎ 2133-5485)